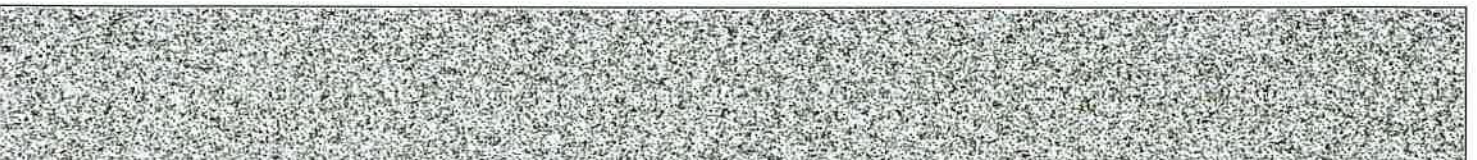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001627			
등록번호	194911-0016277			
상 호	주식회사 칸	.	.	
	주식회사 칸 (KHAN CO., Ltd.)	2011.10.10 변경	2011.10.21 등기	
본 점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689	.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43-1 3층	2007.06.05 변경	2007.06.07 등기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915 칸빌딩 4층	2009.11.30 변경	2009.12.07 등기	
	경상남도 거제시 용소1길 105, 4층(아주동, 칸빌딩)	2011.10.31 도로 명주소	2013.07.17 등기	
공고방법	경상남도 창원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남신문에 게재한다.	.	.	
1주의 금액	금 10,000 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 주	.	.	
	1,000,000 주	2011.10.10 변경	2011.10.2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10,000 주	변 경 연 월 일		
보통주식	10,000 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50,000 주	금 100,000,000 원		
보통주식	50,000 주	.		.
발행주식의 총수	58,333 주	2011.10.25 변경		2011.10.26 등기
보통주식	50,000 주	금 500,000,000 원		
우선주식	8,333 주	2012.07.17 변경		2012.07.1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24,997 주	금 583,330,000 원		
보통주식	450,000 주	2012.12.04 변경		2012.12.12 등기
우선주식	74,997 주	금 5,249,97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50,000 주	2016.03.25 변경		2016.03.29 등기
보통주식	450,000 주	금 5,249,970,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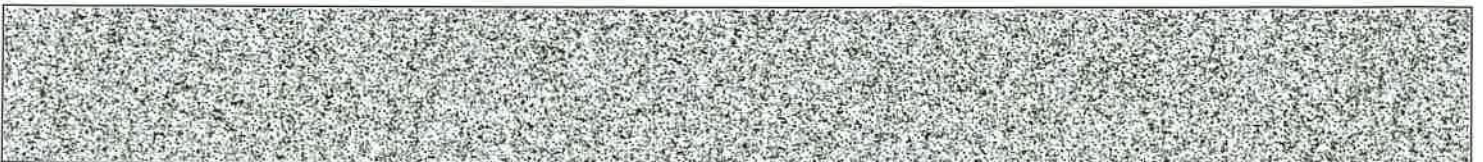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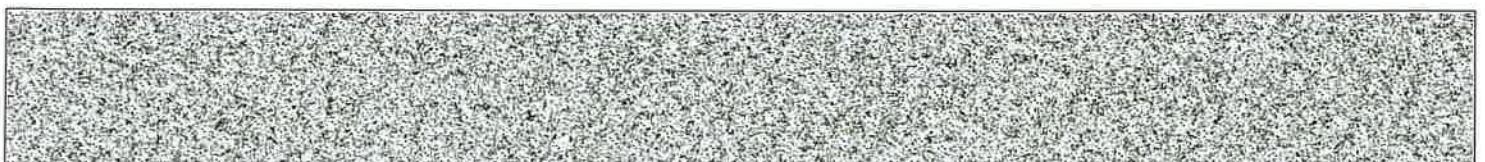
등기번호	001627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543,750 주	금 6,187,470,000 원	2016.05.12 변경
보통주식	450,000 주		2016.05.12 등기
우선주식	93,750 주		

목		적	
1. 해양플랜트제작, 시공업		<2009.11.30 삭제	2009.12.07 등기>
2. 선박시운전			
3. 철구조물제작업		<2009.11.30 삭제	2009.12.07 등기>
4. 선박구성부분품제작업			
5. 조선기자재물류업			
6. 무역업			
7. 위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007.06.05 말소	2007.06.07 등기>
7. 기술용역서비스업		<2007.06.05 추가	2007.06.07 등기>
8.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007.06.05 추가	2007.06.07 등기>
		<2009.11.30 삭제	2009.12.07 등기>
1. 조선, 플랜트, 산업기계, 철구조물 제작 및 시공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고압탱크, 제관, 배관 제작 및 시공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발전기, 터빈, 및 발전소 설비 제작, 시공 및 판매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의 설계, 제작 및 시공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기계, 기기류 및 선박부품, 선박소모품 수출입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소방설비공사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선박수리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산업설비수출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선박 물품공급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국제, 국내 해운 대리점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해운중계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항만용역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항만 검수사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예선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항만 운송 부대사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복합운송주선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선원관리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식육판매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유류판매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고철매매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전기공사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유전개발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등기번호	001627			
1. 유전개발컨설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조선해양관련 엔지니어링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국내외 자원 개발, 투자 및 동 판매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장비임대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부동산임대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수중건설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주택건설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숙박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요식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이벤트 기획사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관광사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방역사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렌터카사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연구.개발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컨설팅사업(기술전문)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선박건조 계약 거래의 중계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시스템통합사업(소프트웨어개발, 공급, 통합자동화시스템분석, 개발, 설비 및 설치)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교육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1. 위 각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2009.11.30	추가	2009.12.07	등기>
	<2015.12.16	삭제	2015.12.23	등기>
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2015.12.16	추가	2015.12.23	등기>
1. 위 각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2015.12.16	추가	2015.12.23	등기>
	<2015.12.16	삭제	2017.09.11	등기>
1. 일반여행업(국내외포함)	<2017.09.06	추가	2017.09.11	등기>
1. 강구조물공사업	<2017.09.06	추가	2017.09.11	등기>
1. 기계설비공사업	<2017.09.06	추가	2017.09.11	등기>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업	<2017.09.06	추가	2017.09.11	등기>
1. 태양광, 수력, 소수력, 풍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업	<2017.09.06	추가	2017.09.11	등기>
1. 전기판매사업	<2017.09.06	추가	2017.09.11	등기>
1. 알루미늄제품 및 선박사업	<2017.09.06	추가	2017.09.11	등기>
1. 정보통신공사업	<2017.09.06	추가	2017.09.11	등기>
1.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2017.09.06	추가	2017.09.11	등기>
	<2018.09.28	삭제	2018.10.01	등기>
1. 강선건조업	<2018.09.28	추가	2018.10.01	등기>
1.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2018.09.28	추가	2018.10.01	등기>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의 일체	<2018.09.28	추가	2018.10.01	등기>
	<2020.07.06	삭제	2020.07.16	등기>
1. 의료기기도매업	<2020.07.06	추가	2020.07.16	등기>



등기번호	001627
------	--------

1. 위 각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2020.07.06 추가 2020.07.16 등기>
1. 해양운송업	<2022.05.24 추가 2022.06.02 등기>

전 환 사 채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이백억원정(20,000,000,000)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일십억(1,000,000,000)원권 (20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이백억원정 (20,000,000,000)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율 : 사채권면액의 100%

나. 전환가격 : 보통주식 1주당 금160,000원 (액면가격 10,000)

다. 전환가격조정 :

1)발행회사가 (i) 유상 신주 또는 (ii)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등 (이하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의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단, 아래 가)와 다)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된다

가)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주식 등이 발행되는 경우

주식 등의 발행가액, 전환가액 및 행사가액 (이하 “발행가액 등”)이 본건 사채의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전환 가액은 해당주식 등의 발행가액 등으로 자동 조정된다

나) 상장(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말하며, 코넥스 시장 및 K-OTC 시장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해외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위한 주식공모가격이 확정된 경우

본건 사채의 당시의 전환가액과 확정된 주식공모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이 자동 조정 된다.

다) 시가를 하회하는 주식 등이 발행되는 경우

상장 전, 후를 불문하고, 당시의 보통주식의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 등이 발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이 자동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times$ $\{[A+(B \times C/D)]/(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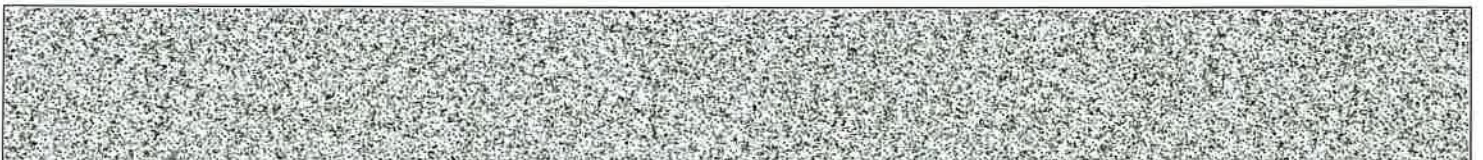
A:기발행주식총수

B:신발행주식총수

C:1주당 발행가액 등

D:시가

(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행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i) 기발행 보통주식수, (ii)본건 사채가 조정 전 전환가액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에 발행될 보통주식수 및 (iii)사채권자 이외의 자가 보유한,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가 당시의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이 행사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당시의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발행될 보통주식수의 합계를 의미하며, 전환주식,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있어서의 “신발행주식총수”는 당해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기번호	001627
------	--------

발행 시 최초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최초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2) 위 산식 중 “발행가액 등”은 전환주식,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최초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2) 위 제1)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과 별개로 상장 이후에는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그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전환가액의 하향조정만을 하고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가) 조정일

상장 후 시장에서의 최초거래일로부터 3개월이 매 경과된 날

나) 조정사유 및 전환가액의 조정

각 조정일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위 1)에 따라 조정된 최근의 전환가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3)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받았을 주식수를 보장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4)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SPAC과의 합병 등을 통한 우회상장 포함) 되는 경우 전환가액은 상장 직전 조정된 전환가액과 합병법인의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70]%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한다.

5) 본건 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총수) / (기발행주식총수 + 신발행주식총수)

6) 2019 사업연도의 발행회사의 영업이익이 98억원의 80%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최초전환가액 × (2019 사업연도 영업이익 / 78.4억원)

단, 본 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액의 80%를 한도로 한다.

7) 본항에 정한 전환비율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되며,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본항에 따른 전환비율 조정의 결과 전환가액이 발행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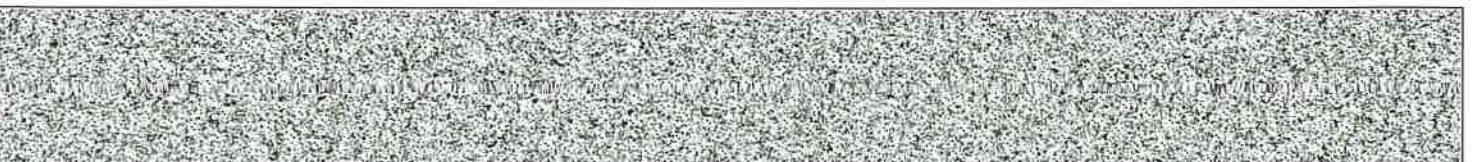
1.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7월 27일부터 만기일 전일인 2022년 7월 25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8 년 07 월 27 일 설정 2018 년 08 월 17 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06 년 11 월 21 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6 년 11 월 21 일 등기
-------------------------	---------------------



등기번호	001627
------	--------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4년 01월 02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전산운영책임관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